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1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특별교통수단 상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도 개정(2019.7.5.시행)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7. 25. ~ 8. 14.)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16조제3항 중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p> <p>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p> <p>2. ~ 4. (생략)</p> <p>② (생략)</p> <p>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② (생략)</p> <p>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대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으로 이동편의증진 계획에서 정한다.</p> <p>제19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와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역철도의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p>	<p>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p> <p>① ----- -----.</p> <p>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p> <p>제19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정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 -----</p>

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변경(개정안 제15조의1항 제1호)에 따라, 이용대상자가 확대 및 차량 법정대수가 증가되어 '증차' 비용 발생

- 조례 개정 시 이용대상 확대 : (현행) 85,955명 → (확대) 108,947명 예상
- 차량 법정대수 기준 변경 : (현행) 장애인 200명당 1대 → (확대) 150명당 1대
 - ※ 국토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으로, 차량 법정대수 기준 변경됨(장애인 200명당 1대 → 150명당 1대)

(조례 개정 및 법정 차량 대수)

구분	장애인수	법정 필요 차량 수	현재 차량수	비 고
현행 (200명당 1대)	85,955명	85,955명 / 200명 = 430대	500	법정대수 '충족'
변경 (150명당 1대)	108,947명	108,947명 / 150명 = 726	500	향후 226대 추가 증차 필요

※ 2019년말 기준 500대 반영('19년 예산 반영분 연말까지 63대 추가 구매 예정)

※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은 '22년까지 282대 증차 필요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세출의 구체적 산정

1)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차량 증차' 계획 수립

- 차량 증차 계획 : '20년 100대, '21년 100대, '22년 26대(시장공약사항 기준 82대)

※ '19년 45대 증차 계획이었으나, 국비보조(신규차량 40% 지원)으로 756백만원 지원됨에 따라 18대 추가 구매 ('19년 증차 63대)

2) 차량 구매비 9,492백만원 소요 예상('20년 ~ '22년)

'20년	'21년	'22년
42백만원 × 100대 = 4,200백만원	42백만원 × 100대 = 4,200백만원	42백만원 × 26대 = 1,092백만원

※ 민선7기 시장공약('20년 100대, '21년 100대, '22년 82대) 차량구매비 11,844백만원 소요 예상

3) 차량 운전원 인건비 및 유류비로 16,113백만원(※ 시장공약 : 20,106백만원) 추가 소요 예상

※ 차량 1대당 인건비 등 운영비

구분	금 액	비 고
합 계	71,300,000원	
운전사 인건비 (1대당 1.5명 기준) ※ 장물 24시간 운영	58,500,000원	* 1인 소요 인건비 35백만원 * 1인 4대 보험비 4백만원
유류비	8,500,000원	
기타 경비	보험비	1,100,000원
	정비비	3,000,000원
	자동차세 등	200,000원